

##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2022. 04. 01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제2항('19.6.12 시행)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
**주식회사 와이지인베스트먼트**